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기자회견 사회 : 엄진령 노무사(철폐연대 법률위)

1. 홍대 청소노동자 투쟁경과 및 노조탄압, 일방적 최저가 용역입찰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보고 : 박명석 지부장(공공노조 서경지부)

2. 홍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보고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3.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 및 임금체불 진정 취지 및 내용 설명 : 강민주 노무사(노노모, 공공노조 법률지원센터)

4. 홍익대학교 ROTC 동원의혹에 대한 법률적 의견 : 강호민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새날)

5. 홍익대학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 제출 취지 및 내용 설명 : 우지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

6. 기자회견문 낭독 : 유상철 노무사(노노모 사무국장)

7. 질의응답

■ 일시 및 장소 : 2011. 1. 27.(목) 오전 10시, 홍익대 정문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발 신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개최
전송일자 :	2011. 1. 27.(목)
전송매수 :	총 25매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개최

1. **2011. 1. 27.(목) 오전 10시,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철폐연대 법률위)는 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의 청소용역업체 계약해지로 인하여 해고가 되어, 1. 27. 현재 24일차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에 대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홍익대측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각 노동부 서부지청 및 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우지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강호민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강민주 노무사(노노모) 등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보고' 및 '홍익대측의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대하여 고소장 제출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홍익대의 ROTC 동원의혹에 대한 법적인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소속 변호사, 노무사 등 10여명의 법률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3.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노조 서경지부 및 홍익대분회는 홍익대측을 상대로 고용승계 및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학교측은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하였고, 고용승계에 대한 성실한 교섭은커녕

새로운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4.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강문대 변호사를 법률지원단장으로 하여 총 9명의 변호사와 강민주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노모 소속 노무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오늘 제출한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대리 및 홍익대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형사변론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5.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4개 법률가단체들은 홍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오늘 홍익대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홍익대에 의하여 고소고발된 조합간부에 대하여 변론을 할 것임을" 밝혔으며,

"홍익대는 힘없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 당사자로서,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홍익대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홍익대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임이 명백하며...본 계약해지는 노조설립을 와해하겠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홍익대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지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ROTC 학생들의 농성장 투입 의혹에 대해서는 홍익대 총장 및 학군단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진실규명에 따른 불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지원단 및 법률가단체들은 **"홍익대가 계속하여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우리 법률지원단 및 법률가단체들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홍익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6. 이에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보내 드리오니 언론사 기자여러분의 많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별첨1. ‘노조탄압, 일방적 최저가 용역입찰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4p)
별첨2.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소장’(6p)
별첨3.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임금체불 내역’(15p)
별첨4. ‘홍익대 미화원 임금명세서’(17p)
별첨5. ‘홍익대 미화원 근무수칙’(18p)
별첨6. ‘홍익대학교 ROTC 동원의혹에 대한 법률적 의견’(19p)
별첨7.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문’(23p)

노조탄압, 일방적 최저가 용역입찰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 고용불안, 최저가낙찰 일방적인 용역입찰

- 홍익대는 최근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겠다며 입찰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홍익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배제한 채 용역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요구하던 '조건없는 고용승계', '생활임금', '노동조건 개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 공공노조는 1월 25일 홍익대 측에 용역업체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식 통보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1월 24일 경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소문만 끊임없이 돌고 있으며, 정작 홍익대 당국은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다. 도대체 홍익대 당국이 집단해고 사태, 장기간의 농성투쟁을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그러던 중 우리 공공노조는 경악할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부 서울지역 소재 용역업체들이 공공노조와의 공식 교섭석상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홍익대는 고용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집단해고에 이어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홍익대는 여전히 귀와 입을 닫은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상황이다.

* 재단적립금 4,800억원의 재단이 최저가낙찰을 진행

- 대학정보공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홍익재단의 재단적립금은 4,857여억 원에 달해 국내 사립대학 중 세 번째로 많다. 3년간 재단적립금 증가율은 31.3%에 달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단의 부의 축적은 무턱대고 등록금을 인상해온 결과이며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결과다. 학생들에게는 높은 등록금으로 등골이 휘게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극악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를 해온 결과인 것이다.

- 이렇듯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동시에 쥐어짜온 홍익대학교가 금번 사태를 맞이하고서도 최저가낙찰을 진행한 것은 그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홍익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와 동시에 하루아침에 대량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홍익대학교가 금번 사태로부터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홍익대의 이러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홍익대에서의 노사분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 또한 2005년 최재성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홍익대는 2004년 재단이월금이 조사대상 30개 사립대학 중 2위를 기록했지만, 홍익대의 교육비환원율(교육비환원율은 학교 운영비 지출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음) 순위는 12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학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1만 여명의 홍익대 학생들에게도 처참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영리 교육재단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갖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홍익대학교는 더이상 재단 이사장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홍익대학교가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노동자들이 살맛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노동조합 결성 직후 계약해지, 노동조합 간부 고소고발로 노동조합 탄압**

- 학교를 방문한 야당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면담에서는 조속한 사태해결을 약속해놓고 최근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명문사학을 자처하는 홍익대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각종 혐의를 뒤집어 씌워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배제-탄압하면서 가장 비열한 수단을 써서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을 다시 노예로 만드려는 홍익대를 규탄한다.

- 홍익대학교 측은 금번 사태를 진실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즉각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홍익대가 야기한 금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홍익대 당국의 사과는 비단 당사자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이번 홍익대 사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홍익대는 지금 즉각 신규용역업체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이미 진행된 최저가 입찰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라.

- 홍익대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보장하라.

- 홍익대가 지금 즉각 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를 통해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의 소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고 소 장

고소인 1 이숙희

서울 영등포구 대림 3동 739-4 철도회관 4층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010-4220-1107/(02-498-6535))

(그 외 고소인 근로자 68인 명단 별지기재)

피고소인 1 학교법인 홍익학원(이사장 이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번지(☎02-320-1114)

2 향우종합관리(주)(대표자 송영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1가 656-282(☎02-417-9390)

3 (주)인광엔지니어링(대표자 정상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3-2 관양빌딩 2층(☎02-338-4602)

고 소 취 지

고소인 '이숙희 외 68인'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소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피고소인들을 처벌하고 위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 관계

1) 고소인 근로자 '이숙희외 68인'은 홍익대학교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홍익대학교에서 건물 청소 및 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입니다.

2) 피고소인 1 '학교법인 홍익학원(이사장 이면영)'(이하 '피고소인 1' 또는 '학교'라고 함)는 위 소재지에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소인 2, 3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학교의 각 건물들에 대한 청소 및 미화 업무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고, 피고소인 2 '향우종합관리(주)(대표자 송영귀)'(이하 '피고소인 2'라고 함)와 피고소인 3 '(주)인광엔지니어링(대표자 정상호)'은 위 소재지에 각 본사를 두고 용역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피고소인 1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건물 청소 및 미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고소인 근로자들 중 '이판임 외 38인'은 피고소인 2 '향우종합관리(주)'와, 근로자 '이숙희 외 29인'은 피고소인 3 '(주)인광엔지니어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지 홍익대학교에서 건물 청소·미화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들의 근로시간은 "월~금(08:00~18:00), 토(08:00~14:00)"이고,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한 월 급여는 2010년 기준 '향우종합관리(주) 815,835원', '(주)인광엔지니어링 815,840원'입니다.

<2010년 임금구성>

- 향우종합관리(주) : 기본급 752,130원+재수당 63,705원 = **815,835원**
- (주)인광엔지니어링 : 기본급 **815,840원**

<2009년 임금구성>

- 향우종합관리(주) : 기본급 732,000원+재수당 62,000원 = **794,000원**

- (주)인광엔지니어링 : 기본급 **794,000원**

<2008년 임금구성>

- 향우종합관리(주) : 기본급 689,910원+재수당 58,435원 = **748,345원**

위와 같이 고소인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8:00에 출근하여 금요일까지는 18:00에, 토요일은 14:00에 퇴근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근무해 왔지만, 고소인 근로자들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장시간 노동 강요 및 저임금'의 구조속에서도 이 사건 고소인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고용형태와 고용불안 속에서 불평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귀 노동청과 법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3. 피고소인의 위법행위

1) 관련 법 규정 및 취지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⑥항 생략

⑦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⑧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제28조【벌칙】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①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

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하여, 계약관계의 우위를 악용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인 용역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원청사용자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보호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아니 되며, 최대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목적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법 위반의 구체적 사실 및 내용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201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인 '4,110원'을 기준으로 고소인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 근무시간

월~금 : 08:00~18:00 9시간 근무(1시간 휴게시간) / 토 : 08:00~14:00시간 5시간 근무(1시간 휴게시간)

○ 주 1일(8시간) 유급휴일

○ 실 근로시간(1주)

주40시간(법정근로) + 10시간(시간외근로)

○ 임금산정

① (주 실 근로 50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365/7 × 1/12 ≒ 252시간

252시간 × 4,110원 = 1,035,720원

② 시간외근로 수당 : (시간외근로 10시간) × 365/7 × 1/12 ≒ 43시간

43시간 × 0.5 × 4,110원 = 89,295원

③ 월 급여 : ① 1,035,720원 + ② 89,295원 = **1,125,015원**

④ 월 급여 차액분 : **1,125,015원－815,840원 = 309,175원**

⑤ 2010년 급여 차액분 : **309,175원×12월 = 3,710,096원**

피고소인들이 지급한 고소인 근로자들의 2010년 월 급여액은 월 815,840원으로 상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두 용역업체의 명세서상 항목은 차이가 있으나 총액은 동일하고, 총급여액에서 '5원' 차이 발생하나 이는 원단위 절상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여 계산함)

따라서 이 사건 피고소인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금액과 이 사건 고소인들에 대하여 기 지급된 임금액의 차액은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 사건 피고소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지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4,000원) 및 2008년(3,770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액 산정방법은 2010년과 동일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금액 및 근로자별 구체적 산정내역은 은 "별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불총액 및 근로자별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첨자료」참조

3) 용역단가를 낮추기 위한 위법행위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사건 고소인 근로자들은 매주 "56시간"(월~금 08:00~18:00/토 08:00~1400) 동안 사업장인 '홍익대학교'에 상근하면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고소인 근로자들은 점심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잠깐의 사적인 업무를 보기 위하여 학교 밖 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용역업체 소속 관리자에게 보

고를 하거나 '외출증'을 끊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언제라도 청소가 미흡하거나 새로운 오염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바로 지시가 내려지고, 그 지시에 따라 근무를 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업무형태는 피고소인이 2011. 1. 12. 용역입찰 설명회에서 사용한 문건 및 다른 사업장의 용역시방서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7. 청소상태
나. 중앙도서관, 제4공학관(열람실), 홍문관, 체육관(3원~11원)은 수업과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야간에도 청결이 유지되어야 함.
다. 중앙도서관, 제4공학관(열람실)은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도 청결이 유지되어야 함.
8. 인력관리
다. 회사의 현장관리인은 본교 담당직원(일·숙직자 포함)의 지시를 받으며 관리장, 관리반장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

<성신여대 2009. 청소용역 시방서>
5. 기본방침
라. 평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당직인원을 편성 배치하여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 청소요청이 있을 시에는 '을'은 이를 적극 협조한다.

<연세대학교 2009. 미화 및 경비용역 필수조건>
4. 근태 및 인원 관리
나. 학교 사정에 따라 연장근무가 필요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간의 근무수당은 용역회사 규정(미화원)에 준하여 별도 지급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피고소인 2, 3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지 않고, "임금은 최대한 낮게" 책정하되 "근무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는 용역업체들이 원청 사용자인 '홍익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늘리겠다는 목적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 모든 것을 최대 약자인 '청소노동자'들

에게 전가 시켜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살피고 위법하지 않는 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도급인” ‘홍익대학교’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가장 낮은 단가로 가장 많은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위법행위의 책임은 “도급인” 피고소인 1 ‘홍익대학교’와 “수급인” 피고소인 2, 3의 공동책임으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참고로, 다른 학교에서 동일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 08:00~17:00(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 동덕여자대학교 : 07:00~16:00(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 성신여자대학교 : 06:30~15:30(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 이화여자대학교 : 07:00~16:00(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4. 결

이 사건 고소인들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를 행하면서도 열악한 근로조건과 이 사회가 가진 편견, 차별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근로자들이며, 짧게는 1년 길게 10여 년 동안 홍익대학교를 위하여 근무해 온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소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금 더 나은 처우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행하였습니다. 현재 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귀 기울이고 있으며, 그간 행하여졌던 위법행위가 시정되고 근로조건이 보다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끝까지 사용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회피하면서 여전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더 이상 대화로는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부디 귀 청이 이러한 사실들을 면밀히 살피고 조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침해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후 이 사업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27.

고소인 이숙희 외 36인

서울노동청 서부지청 귀중

홍익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체불임금 내역

	성명	회사명	입사시기	2008년 체불액	2009년 체불액	2010년 체불액
1	이**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2	고**	인광	2009. 11	₩ -	₩ 601,810	₩ 3,710,096
3	김**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4	김**	인광	2010. 08	₩ -	₩ -	₩ 1,545,873
5	김**	인광	2009. 03	₩ -	₩ 3,009,048	₩ 3,710,096
6	김**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7	노**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8	박**	인광	2010. 04	₩ -	₩ -	₩ 2,782,572
9	박**	인광	2009. 03	₩ -	₩ 3,009,048	₩ 3,710,096
10	박**	인광	2010. 04	₩ -	₩ -	₩ 2,782,572
11	배**	인광	2010. 06	₩ -	₩ -	₩ 2,164,223
12	서**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13	송**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14	심**	인광	2009. 11	₩ -	₩ 601,810	₩ 3,710,096
15	연**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16	오**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17	윤**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18	이**	인광	2010. 04	₩ -	₩ -	₩ 2,782,572
19	이**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20	이**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21	이**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22	이**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23	이**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24	임**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25	전**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26	전**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27	조**	인광	2010. 09	₩ -	₩ -	₩ 1,236,699
28	조**	인광	2010. 06	₩ -	₩ -	₩ 2,164,223
29	최**	인광	2010. 02	₩ -	₩ -	₩ 3,400,921
30	한**	인광	2009. 01	₩ -	₩ 3,610,857	₩ 3,710,096
1	이**	향우	2003. 08	₩ 3,403,233	₩ 3,610,857	₩ 3,710,096
2	김**	향우	2010. 08	₩ -	₩ -	₩ 1,545,873
3	김**	향우	2009. 12	₩ -	₩ 300,905	₩ 3,710,096
4	김**	향우	2008. 05	₩ 2,268,822	₩ 3,610,857	₩ 3,710,096

5	김**	향우	2010. 07	₩ -	₩ -	₩ 1,855,048
6	김**	향우	2010. 08	₩ -	₩ -	₩ 1,545,873
7	김**	향우	1997. 11	₩ 3,403,233	₩ 3,610,857	₩ 3,710,096
8	김**	향우	2010. 10	₩ -	₩ -	₩ 927,524
9	김**	향우	2010. 05	₩ -	₩ -	₩ 2,473,397
10	김**	향우	2009. 08	₩ -	₩ 1,504,524	₩ 3,710,096
11	김**	향우	2001. 06	₩ 3,403,233	₩ 3,610,857	₩ 3,710,096
12	김**	향우	2009. 11	₩ -	₩ 601,810	₩ 3,710,096
13	김**	향우	2007. 03	₩ 3,403,233	₩ 3,610,857	₩ 3,710,096
14	도**	향우	2006. 11	₩ 3,403,233	₩ 3,610,857	₩ 3,710,096
15	두**	향우	2000. 03	₩ 3,403,233	₩ 3,610,857	₩ 3,710,096
16	박**	향우	2007. 08	₩ 3,403,233	₩ 3,610,857	₩ 3,710,096
17	박**	향우	2005. 04	₩ 3,403,233	₩ 3,610,857	₩ 3,710,096
18	박**	향우	2001. 11	₩ 3,403,233	₩ 3,610,857	₩ 3,710,096
19	박**	향우	2005. 11	₩ 3,403,233	₩ 3,610,857	₩ 3,710,096
20	박**	향우	2009. 12	₩ -	₩ 300,905	₩ 3,710,096
21	배**	향우	2010. 01	₩ -	₩ -	₩ 3,710,096
22	신**	향우	2008. 07	₩ 1,701,616	₩ 3,610,857	₩ 3,710,096
23	심**	향우	2005. 11	₩ 3,403,233	₩ 3,610,857	₩ 3,710,096
24	양**	향우	2010. 09	₩ -	₩ -	₩ 1,236,699
25	양**	향우	2008. 08	₩ 1,418,014	₩ 3,610,857	₩ 3,710,096
26	윤**	향우	1999. 11	₩ 3,403,233	₩ 3,610,857	₩ 3,710,096
27	이**	향우	2009. 05	₩ -	₩ 2,407,238	₩ 3,710,096
28	이**	향우	2009. 06	₩ -	₩ 2,106,333	₩ 3,710,096
29	이**	향우	2006. 12	₩ 3,403,233	₩ 3,610,857	₩ 3,710,096
30	임**	향우	2010. 09	₩ -	₩ -	₩ 1,236,699
31	장**	향우	2004. 11	₩ 3,403,233	₩ 3,610,857	₩ 3,710,096
32	장**	향우	2007. 07	₩ 3,403,233	₩ 3,610,857	₩ 3,710,096
33	조**	향우	2010. 08	₩ -	₩ -	₩ 1,545,873
34	차**	향우	2010. 02	₩ -	₩ -	₩ 3,400,921
35	최**	향우	2010. 12	₩ -	₩ -	₩ 309,175
36	최**	향우	2009. 04	₩ -	₩ 2,708,143	₩ 3,710,096
37	최**	향우	2002. 10	₩ 3,403,233	₩ 3,610,857	₩ 3,710,096
38	최**	향우	2009. 04	₩ -	₩ 2,708,143	₩ 3,710,096
39	한**	향우	2010. 04	₩ -	₩ -	₩ 2,782,572
	합계			₩ 59,840,178	₩ 149,850,571	₩ 219,513,996

2010 년 09 월분 급(상)여 지급 명세서

소 속
홍익대학교(미화)
사 원 번 호
성 명

지 급 내 역			
기 본 급	752,130	근속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상 여 금	
야간수당			
공휴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63,705		
계		815,835	

공 제 내 역			
소 득 세		고용보험	3,671
주 민 세		연말정산	
국민연금	36,670	건강보험정산	
건강보험	23,169		
신원보험			
계		63,510	
차 감 지 급 액		752,325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향우종합관리주식회사

※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급 여 지 급 명 세 서

소명: 홍 익 대 학 교 2010년 10 월분

명	사원번호	직 책
		미화원

결근일수	O/T시간	

급 및 공제 명세

기 본 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illegible]		
815,840							
식 대	연차수당		퇴허수당	휴일수당	기타수당	결근공제	지급총액
							[redacted]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총공제액
240	20	21,740	36,670	3,670			63,760
가불금	식대공제	기타공제	양보험금				실수령액
			1,420				[redacted]

815,840

752,080

~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주)인광엔지니어링

+7

미화원 근무수칙

근무자는 수시로(최소한 오전, 오후 각 2회) 담당구역을 점검하여 청결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1.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타 부서에서 찾아가 잡담을 하거나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무자는 사적인 용무로 정위치를 이탈할 수 없으며,부득이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보고 후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 긴급사태나 긴급연락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무자가 부득이한 지각, 조퇴, 결근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허락을 득 하여야 한다.

5. 근무자는 식사시간 외에 취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근무자는 업무에 불필요한 사물을 근무자에 방치하거나 전열 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상기 근무수칙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전 직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향우종합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익대학교 ROTC 동원의혹에 대한 법률적 의견

1. 사건의 개요

▶2010. 12. 2. 공공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 설립
▶2010. 12. 3. 홍익대학교,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 해지통보
▶2011. 1. 2. 홍익대학교, 노조원들 강제로 업무 중단시키고 퇴거 요구
▶2011. 1. 3, 노조, 본관 1층 교무처에서 집단농성
▶2011. 1. 9. 노조, 농성장에서 ROTC 49기(임관・대학 졸업 예정자) 3~4명 확인

2. 법률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본 사건은 법적 문제 이전에 양식(良識)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임관이 예정되어 있는 학군단 후보생들은 장차 군인으로서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학 중 병영생활에서는 군인복무규율,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 군인복무규율
제9조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그런데 홍익대학교에서는
- 병역법 제57조,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해 병적을 가지고 군사교육을 받는 장교 후보생들을

- 공공노조 홍익대 분회의 조합원들처럼 이른바 '근로빈곤계층'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분쟁 현장에,
- 일당 12만원 정도를 주고 시설경비 업무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규 위반을 논하기 이전에, 홍익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의혹 및 법적 규율

나아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당시 농성장에서 홍익대 학군단장의 개인 명함이 발견된 점, ② 농성장에서 신분 확인된 학군단 사관후보생들이 농성장 투입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즉답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숨기려 한 점, ③ 신문보도(2011. 1. 11. 오마이뉴스 "홍익대 'ROTC 경비원' 일당은 12만원")에 따르면 경비 근무에 투입된 총 40명 중 14명이 학군단 소속 학생들로서 학군단 후보생들의 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참여라 보기에는 다소 많아 보이는 점 ④ 처음에는 학생들이 애교심(愛校心)에서 자발적으로 경비 업무에 임했다고 했다가 나중에서야 일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홍익대학교측의 관련 진술이 불일치한 점

만약 홍익대학교 측에서
- 총장의 승인 하에 학내 시설관리 등을 명목으로 하여
- 학군단장을 비롯한 학군단 지휘부에
- 사관후보생들을 노조 농성장에 집단적으로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 이에 학군단 지휘부가 이를 수락하여 일부 후보생들을 동원하였거나
- 또는 학교측의 동원에 대해 묵인/수용하였다면

이는 형사처벌 및 행정징계가 불가피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 형사적 문제

먼저 형사적으로는 '공무원'인 학군단장 등이 학교측의 요구를 수락하고 적극적으로 학군단 후보생들을 동원하였다면 학군단장에게는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홍익대 총장등이 학군단장등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같은 의뢰를 하였기 때문에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 적용되어 홍익대 총장 등은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즉 **공무원인 학군단장이 학군단사관후보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홍익대학교 교직원의 대체근로에 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처벌되고, 홍익대 총장 등은 신분있는 자에 가공하여 공범을 저질렀으므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나. 행정상 징계의 문제

다음으로 행정상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학군단장은

▶ **군인복무규율 제14조(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등이 적용되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상 징계의 경우에는 ① 학군단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학군단후보생들을 동원한 경우는 물론 ② 그렇지는 않더라도 학교측이 학군단 후보생들을 집중적으로 연락하여 일당을 매개로 동원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법상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군단 후보생들이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직무태만이자 품위 손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요구 및 재발 방지 촉구

이에 우리는 위 의혹에 대하여 첫째, 홍익대학교 총장과 학군단장 등의 책임 있는 해명, 둘째, 진실 규명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단순한 학내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노동법 준수 및 교육적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방부・교과부 등 관련 기관들은 추후 학군단 후보생들이 학교 측의 필요에 의해 사회적 분쟁의 현장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관련 규정의 정비 없이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문

1. 홍익대학교는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와 즉각 교섭에 응하고,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지난 2010년 12월 31일 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가 청소시설관리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 한 후, 실질적 해고를 당한 홍익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농성은 1월 27일 현재 24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냉기 서린 건물바닥에서 오직 한 가지, 고용승계만을 홍익대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학교측의 대답은 공공노조 서경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이었다. 또한 대학측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조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입찰계약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법률가단체들은 홍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오늘 홍익대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홍익대에 의하여 고소고발된 조합간부에 대하여 변론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 홍익대를 규탄한다!

201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액인 '4,110원'을 기준으로 하여 실급여액을 계산하면, 홍익대 청소관리 노동자들의 2010년 기준 월 급여액은 815,840원으로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을 적용한 임금액과 노동자들에 대하여 지급되었던 임금액의 차액은 체불임금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법 제6조 등에 의하여 '수급인'인 해당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낮은 단가로 가장 많은 근로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홍익대가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결국 홍익대는 힘없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

당사자로서,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홍익대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이며,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라!

판례는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홍익대측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과 용역업체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자로서 도급금액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실제 일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들을 휴게시간에 근로하거나 대기하도록 만들기도 하였고, 업무와 무관한 집회 현장에 노동자들을 동원시키면서 근태관리, 직무교육 등을 직접 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홍익대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홍익대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임이 명백하다.

또한 홍익대는 이번 계약해지가 마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홍익대는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가 설립되자마자 계약만료를 통지한 후 청소용역업무의 공백이 우려되자 용역업체에 3개월 계약연장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본 계약해지는 노조설립을 와해하겠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홍익대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4. 홍익대는 ROTC 동원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ROTC 학생들은 병역법 제57조,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해 병적을 가지고 군사교육을 받는 장교 후보생들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ROTC 학생들이 농성장에 시설경비 등의 명목으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홍익대가 ROTC 학생들의 동원과 관련하여 학군단 지휘부와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협의를 하였거나 학군단이 이를 묵인/수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무원인 학군단장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익대 총장 역시 형법 제30조 등이 적용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학군단장은 학군단 후보생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사법 제56조에 의해 직무태만 또는 품위 손상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홍익대가 최소한의 양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ROTC 학생들의 농성장 투입 의혹에 대해서는 홍익대 총장 및 학군단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진실규명에 따른 불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및 법률가단체들은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은 홍익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지금이라도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홍익대가 계속하여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우리 법률지원단 및 법률가단체들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홍익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홍익대는 즉각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홍익대를 규탄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홍익대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1년 1월 27일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